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

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,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거주지 구분 없이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·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

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.

이로써,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